|  |  |  |
| --- | --- | --- |
| **화물원산지증명서 비용 면제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재종[2014]24호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각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의 재정청(국)·발전개혁 위원회·물가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발전개혁위원회:  대외무역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물원산지증명서 비용 면제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2014년 5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지방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수출화물 발송인에게 수출화물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른 화물원산지증명서 비용을 면제한다.  2.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지방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법에 따라 직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동급 재정예산에서 총괄적으로 기획하여 안배한다.  3. 각 지역과 해당 기관은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화물원산지증명서 비용 면제 정책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집행을 지연하거나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각 급 재정·가격주관부서는 본 통지의 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재정부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2014년 5월 6일 |  | **关于免收货物原产地证书费有关**  **问题的通知**  财综[2014]24号  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发展改革委、物价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发展改革委：  为减轻外贸企业负担，促进出口稳定增长，现就免收货物原产地证书费有关问题通知如下：  　 一、自2014年5月1日起至2014年12月31日，中国贸促会和地方贸促会对出口货物发货人签发出口货物原产地证书时，免收货物原产地证书费。  　　二、中国贸促会和地方贸促会依法履行职能所需经费由同级财政预算予以统筹安排。  　　三、各地区和有关单位要严格执行本通知规定，落实免收货物原产地证书费政策，不得以任何理由拖延或者拒绝执行。各级财政、价格主管部门要加强对落实本通知情况的监督检查。  　　财政部  国家发展改革委  　　2014年5月6日 |